#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81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이원택·이병진·임호선

최민희 • 정청래 • 윤준병

김승원 · 임미애 · 서삼석

주철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①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u>202</u>	<u>202</u>
<u>5년 12월 31일</u> 까지의 기간(이	8년 12월 31일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⑧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